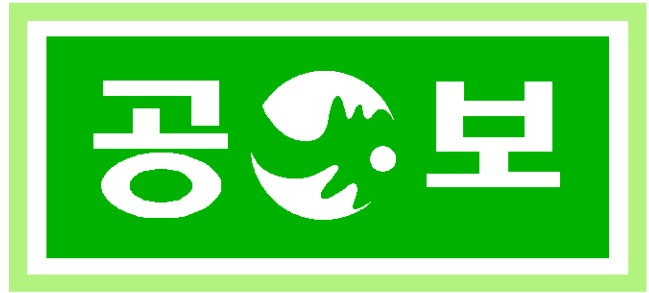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관	기 관 의 장



제 712 호 2011. 10. 12(수)

공 고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627호[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2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19-7207 행정720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627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의 건강한 공동체를 복원하여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주민 참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나. 사업공모 및 신청, 지원절차의 규정 (안 제6조, 제7조)
- 다. 사업주체는 사업 입안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규정 (안 제8조)
- 라. 사업추진의 자문 및 추진 과정에 따른 교육, 우수사례 현장견학, 우수자원 발표 등 육성 지원 (안 제9조)

- 마.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실시 후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 (안 제14조)
- 바.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6조, 제17조)
- 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안 제18조)
- 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센터 설치 및 센터의 기능 규정 (안 제24조, 제25조)
- 자. 지원센터 운영방법 규정 (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참여과장, 전화219-7654, 팩스219-7659)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